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8
----------	-----

2023년 5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9. 최호정 의원 외 37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4. 3.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함(별표).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휴일 현지 기관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기관방문 심사기준 중 “1일”을 “평일”로 변경하여 심사기준을 현실화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음.

2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시행(2022.1.13.)에 맞춰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의회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이하 “조례”)로 제정·시행(2022.1.13.) 중임.
-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함.
- 이때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국외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기관의 적절성, ▶국외출장 참가자 수와 구성의 적합성,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국외출장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 활용성 등의 항목을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17개)에 적용해 심사함.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국외출장 인원수와 국외출장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출장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장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3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심사기준란)

- 개정안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서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중 제4호의 “1일”을 “평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2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생 략)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현행과 같음)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 활동 중 불필요한 이 동은 없는가?				4. 평일 ----- ----- -----		

-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방문계획에도 휴일 공공기관 방문계획 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해당 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방문 국가의 공휴일과 주말에 기관방문을 제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보고,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며, 토요일은 휴무로 규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관광·외유성 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지방의회운영팀 구두답변(2023.3.30.)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각 개별 조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휴일일지라도 출장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관광성·외유성을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도록 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평일”로 변경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과 실천을 제고하기 위함임.
- 다만,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침에서도 공무수행이 어려운 공휴일, 휴가철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1일 2개 기관 이상 방문 일정을 원칙으로 출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의회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해당기관의 조례 정비도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구미경,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38명)

1.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함(별표)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제4호의 “1일”을 “평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2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항목	심사기준	예	아 니 오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생 략)			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 3. (현행과 같음)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4. 평일 ----- ----- ----- -		